

조선전기 불교계 고승의 上疏 검토

黃仁奎*

目 次

- I. 들어가는 말
- II. 王室관련 사찰 고승의 奏請
- III. 國家관련 사찰 고승의 上言
- IV. 佛敎界관련 고승의 上疏
- V. 나가는 말

■ 한글 요약

본 연구는 승유역불시책이 본격 가속화 되었던 조선전기 불교계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은 없었는가를 해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조선불교는 무종단이나 산중불교라는 시각으로 침체된 불교상을 그리는 것은 조선불교 나아가 한국불교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고려 후기 성리학으로 사상적 무기로 하여 대두된 신진사류의 승유역불운동이 본격화되고 조선건국 후 그것이 시책으로 전개되어 불교계가 역사상 초유의 탄압을 받을 때 불교계의 승려들의 대응문제는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실록에 의하면 조선전기 불교계의 승려들의 상소들도 찾아지나 상소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문의 전문이 찾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상언을 하였다는 간략한 정도의 내용만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실록 자체가 승유억불을 주창한 기록이라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승려의 상소를 올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스럽기조차 하다.

실록에 나타난 상소는 승려 개인의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외의 승려들이 집단적으로 올린 경우도 있다. 상소를 내용상으로 나누어 보면 왕실과 국가관련 사찰의 주지급 고승의 상언과 불교계의 전면에서 활약한 고승들의 상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왕실사찰이나 국가사찰의 주지급고승의 상언은 사찰의 불사나 田租 등 왕실 및 국가사찰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불교계 전체를 위한 상소는 불교계 쇄신을 위한 승풍의 진작, 불교계 탄압시책에 대한 저항, 연화승의 척결, 승과 과목의 현실적 조정 등이었다.

상소를 올린 승계 및 승직은 대부분 왕실과 국가관련 사찰의 주지급 고승들이다. 상소를 올린 곳은 왕이나 6조, 그리고 승정원 등이었는데 승려의 출입이 금지된 분위기속에서 승정원에 직접 나가 상언을 하여 유생들의 비난 상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불교계 고승들의 상소문이나 불교계 전체를 위한 상소문도 대부분 왕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불교계의 일부 선각자들의 상소 등 노력으로 불교계에 대한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탄압의 유보나 그 강도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불교계 고승들의 노력은 승유억불시책과 이 강화되던 시기의 불교계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자정과 저항의 모습이 생 각된다.

- 주제어: 상부(尙浮), 석휴(釋休), 성우(省愚), 학조(學祖),
 능료(能了), 자수궁(慈壽宮), 장의사(莊義寺),
 해선(海宣), 명호(明昊), 각돈(覺敦), 자초(自超),
 운오(雲悟), 수미(守眉), 신미(信眉).

I.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에 불교이해는 아직 일천한 듯 하다. 개국 초 승유억불시책으로 말미암아 조선시대를 유교문화가 전적으로 지배하였다거나 불교가 침체되어 산중불교나 무종단의 침체된 것이라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견해는 도식적인 이해일 뿐이다.

고려말 이래 승유억불시책이 본격화되고 개국 초 국가의 기본시책이 되었지만 조선중기까지 정신·문화계에 있어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았다. 이는 고려말 이래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개혁적인 성향을 지니고 불교계의 혁신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심지어는 고승들의 피와 땀을 흘린 덕택이었다. 대부분의 승려들이 억불시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중으로 들어가거나 사회현실에 소극적인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일부 선각자들은 불교의 흥성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순교승들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¹⁾

본고에서는 이러한 승유억불시책으로 불교계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는 가운데 불교계의 전면에 나서서 활동한 승려들의 상소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하였다.

그 동안 불교계의 상소문에 대한 검토는 白谷處能(1617~1618)의 상소를 중심으로 태조대 홍천사 감주 尙聰에 국한 되어 논의되어왔지만²⁾

-
- 1) 황인규, 「조선전기 불교계의 고승탄압과 순교승」, 『불교사연구』 5·6 합집,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2004. ;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 혜안, 2005.
 - 2) 그동안 불교계의 상소문에 대한 연구에 다음의 논고에 지나지 않는다. 김영태, 「이조대의 불가상소」, 『불교학보』 10,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73. ; 김용조, 「백곡처능의 간폐석교소에 관한 연구」, 『한국불교학』 4, 1979. ; 김기녕, 「조선시대 호불론 연구: 합허와 백곡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0. ; 「현정론, 간폐석교소: 조선시대

본고에서는 실록에 기재되어 있는, 조선전기 승려들의 상소를 각 시기에 따른 불교사의 흐름과 대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王室관련 고승의 奏請

실록에 나타난 승려의 상소³⁾는 태조대부터 연산군대에 이르기까지 그 주체자 및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왕대 / 주체자 / 승계 및 승직 / 대상 / 내용

1) 왕실관련사찰 고승의 奏請

태종 7년	尙浮	兩街都僧統	왕	계림 백률사의 전단관음상을 개경사에 이안토록 청함.
태종 12년	釋休	覺林寺 주지	왕	승려들이 田稅件으로 고소를 당한 것을 취하고 요역이 많다고 상언함.
세조 11년	京外の 僧人		왕	원각사 중창에 참여한 승려들에게 도첩을 주도록 상언함.
세조 12년	省愚	福泉寺 승려	호조	북천사의 田地의 收租를 상언함.
성종 14년	學祖	봉선사 주지	왕	봉선사 주지를 자기와 친분이 있는 행경을 임명토록 청함.
성종 21년	能了	연경사 주지	왕	절을 보수하도록 연목을 청함.
성종 23년	奉先寺 僧侶		왕	수륙재 비용의 마련을 위해 상언함.
연산군 2년	慈壽宮 尙宮 崔氏		왕	20세 이하의 비구니를 환속시키지 말 것을 상언함.
연산군 2년	莊義寺 僧侶		예조	절이 퇴락하였으므로 선공감으로 하여금 수리토록 보고함.

의 호불론」, 한국불교연구원, 2003.

3)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소의 다른 이름인 ‘奏請’ ‘上言’ ‘上疏’ 용어는 의미상 구분이 아니라 용어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 국가관련 사찰 고승의 上言

태종 6년	海宣 別窯	화주	왕	별요를 설치토록 상언함.
세종 5년	明昊	한증승	왕	한증소를 짓게 해달라고 상언함.
세종 6년	해선	별요 화주	왕	별요를 재설치하여 운용토록 상언함.
세종 9년	天祐·乙乳	대선사	예조	한증소의 운영비를 마련하고자 상언함.
세종 32년	覺教	진관사 간사승	안평대군	방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언함.

3) 불교계 관련 고승의 上疏

태조 7년	尙浮	兩街都僧統	왕	승려의 음주를 금지할 것을 청함.
태조 7년	尙聰	興天社 監主	왕	교단의 쇄신을 위해 보조선풍으로 진작 시킬 것을 상언함.
태종 2년	自超	왕사	태상왕	육선을 들 것을 청함.
태종 6년	省敏과	승려들 曹溪寺	승려 왕	불교계 탄압시책을 거둘 것을 수백명의 승려들과 함께 신문고를 치고 상언함.
태종 9년	云梧	興天社 주지	왕	종단에 내려오던 백은을 국가에 상납하고 절의 불사비용을 마련하고자 상언함.
세조 4년	守眉	왕사	승정원	승도들의 緣緣폐단을 금지하라고 상언함.
세조 14년	수미	왕사	왕	승인의 募緣폐단을 금지하라고 상언함.
예종 1년	信眉	혜각존자	왕	승려의 시험과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고 언문으로 상언함.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록에 나타난 상소문 및 건의문은 23건에 이르고 있다. 이를 왕대별로 나누어보면, 태조대 2, 태종대 6, 세종대 4, 세조대 4, 예종대 1, 성종대 2, 연산군대 2건에 이르고 있어서 각 왕대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내용상으로 구별해보면 왕실관련사찰 9건, 국가관련 사찰 5건, 불교계 전체 8건에 이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계 전반에 걸친 상소라고 할 수 있다.

즉 태조대에 양가도승통 상부와 흥천사 감주 상충의 상소가 있었고 태종대 자초와 성민이 상언을 올렸다. 그리고 세조대의 왕사 수미와 예종대의 혜각존자 신미가 불교계 전반에 대하여 시정사항을 요구하면서

상소를 올렸다. 상소자는 대부분 고위급 고승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상소처는 왕이나 6조 그리고 승정원이다. 당시 승려가 승정원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모양이지만 신미나 학조는 승정원에 직접 나아가 상소를 올렸는데⁴⁾ 학조의 경우 유생들에 의해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⁵⁾

아쉽게도 그들이 올린 상소 내용이 전부 전하고 있는 경우는 한 건도 없고 그 중요내용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상소문은 대부분 한문으로 작성되었을 것이지만 신미의 경우처럼 諺文으로 글을 작성한 사례도 찾아져 주목된다.⁶⁾ 그 상소문의 내용은 승려의 규율문제, 불교계 교단의 분위기 쇄신, 사사전의 혁거에 대한 원상회복, 승려의 선발자격, 사찰 재산 보호, 사찰의 중수 요구 등이다.

상소를 올린 형태를 보게 되면, 승려 개인자격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민의 경우처럼 신문고를 치면서 수백 명을 동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상소를 올린 사례도 찾아진다.⁷⁾ 상소자인 승려의 승계나 승적을 보게 되면 승록사의 양가도승통, 본산 흥천사주, 선종판사, 선교도총섭, 왕실원당의 주지, 별요 화주 도대사나 한증승으로서 대부분 국가나 왕실의 불교운영의 통할하는 위치에 있는 고승들이다. 그 외의 것은 개별적인 사찰이나 승려에 관한 내용들이다.

실록에 나타난 왕실관련 고승이 상언한 사례는 태조대의 개경사, 태종대의 각립사, 세조대의 원각사와 복천사, 연산군대의 자수궁과 장의사에서 찾아지고 있다. 이를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태조대 개경사 주지였던 성민은 계림, 즉 경주의 백률사의 전단 관음상을 개경사에 옮기도록 주청하였다.

4) 『세조실록』 권14, 세조 4년, 9월, 6일 경인조.

5) 『성종실록』 권181, 성종 16년, 7월, 4일 임자조.

6) 『예종실록』 권6, 예종 1년, 6월, 27일 기묘조.

7)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2월, 26일 정해조.

鷄林 栢栗寺의 梅檀像觀音을 開慶寺에 移安하였는데, 개경사 주지 省敏의 아뢰을 좇은 것이었다. (『태조실록』 권24, 태종 12년, 10월, 18일 경오조.)

위의 인용한 글에서 보듯이 상언을 한 省敏은 호가 계정으로 운암사와 내원당의 주지로 있었던 듯 하다.⁸⁾ 그는 李崇仁·권근·변계량·김수온 등 당대의 문인과 교류하였다.⁹⁾ 성민은 태고보우의 문도였고 조선 초 유명 시승으로서 천봉만우와 견줄만하였다고 한다.¹⁰⁾ 그러한 불교계의 최고의 위상을 지녔던 省敏은 1406년에 이미 사찰의 수를 줄이고 토지와 노비를 삭감한 데 대항해 의정부에 대하여 예전처럼 해줄 것을 요구하며 수백 명의 승려를 이끌고 신문고를 쳤던 바 있다.¹¹⁾ 그가 개경사에 전단관음상을 모시자고 상언한 이유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개경사가 지니고 있는 위상 때문일 것이다. 즉 태종 10년 해풍군의 興敎寺 탑을 衍慶寺에 옮길 때 松林縣의 禪興寺¹²⁾

8) 성현, 『용재총화』 8. ; 이공익, 『문집』, 『연려실기술』 별집 권14.

9) 권근, 『雲巖禪老 省敏의 詩의 韻을 次한다.』, 『양촌집』 권9. ; 권근, 『내원당의 성민이 부채에 적어보낸 시의 운을 次한다.』, 『陽村集』 卷10. ; 변계량, 『獨谷의 桂庭詩韻에 따라 시를 지어 玉瑞琛의 시권에 쓰다. 옥서침은 난초와 대나무를 잘 그리는 자이다.』, 『春亭集』 卷4 詩. ; 『題千峰詩藥後』, 『동문선』 권102 跋. ; 金守溫, 『贈敏大選序』, 『拭疣集』 補遺 序. 성민의 승계가 화엄종 대선이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민은 태고보우의 상수제자인 목암찬영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10) 이에 대해서는 줄고를 참조바람.(황인규, 『幻庵混修의 생애와 불교사적 위치』, 『경주사학』 18, 1999.)

11) 『태조실록』 권13, 태종 6년, 2월, 26일 정해조.

12) 선홍사는 도성 東郊에 있었던 고려의 명찰이었다. 상락부원군 方祐가 1459년(세조 5) 중국에서 귀국하여 선홍사를 웅장하고 화려하게 중수하고 10년간 머물렀고(이제현, 『光祿大夫 平章政事上洛府院君方公祠堂碑』, 『익재난고』 권7 碑銘. ; 『동문선』 권118, 비명) 夢庵居士 權坦이 출가 한 사찰이다.(『고려사절요』 권23, 충선왕 3년조. ; 梁誠, 『夢庵權公故事記』, 『訥齋集』 卷5, 雜著. ; 양성지, 『訥齋集墨蹟』, 『訥齋集』.)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시 이미 폐사되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2, 京畿 長湍 都護府條.) 변계량이 『황폐되어 적막한 선홍사 그 사찰에 스님은 간 데 없고 예비만 나는구나(牢落禪興寺 無僧燕子飛(변계량, 『禪興寺에 쓰다.』, 『춘정집』 권2 詩)』라는 구절에서 변계량이 살아 있을 당시 이미 도량이 황량해져 갔음을 알 수 있다.

의 답을 이전 불안하였던 적이 있었을 만큼¹³⁾ 개경사는 태조의 능침사찰로서 조선의 왕실사찰 가운데 가장 비중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성민이 개경사에 관음상을 불안하도록 주청한 지 5개월 후인 태종 13년 3월 태종은 그의 아버지 태조가 부처를 좋아하여 개경사를 세웠다고 하면서 해인사의 대장경을 인경하여 개경사에 불안하고자 한 뜻을 받들었다.¹⁴⁾ 그로부터 2달 후인 5월 태종은 개경사의 관음전 법석에 참여하려고도 하였다.¹⁵⁾ 태종의 아들 세종도 관음께 기도하고 반성을 하기도 하였다.¹⁶⁾ 그의 선대부터 그와 그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관음신앙에 경도되어 있었고¹⁷⁾ 태조의 능침사찰인 개경사는 관음도량의 면모가 돋보이는 사찰이었다.

이와 이 억불군주였던 태종은 개인적으로는 호불신앙의 성향을 띠었다. 그가 잠저시 독서를 하였던 원주 각림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절의 주지가 다음과 같이 상언을 하였다.

(임금이) 명하였다. 原州牧使에게 覺林寺 승려가 收租한 일을 劾問하지 말게 하였다.

원주 각림사 주지 釋休가 와서 아뢰었다.

“신이 서울에 갔을 때 어리석은 僧徒들이 田稅를 많이 거두어 佃客들이 官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부과되는 邑役도 너무 많습니니다.”

승정원에 명하여 原州에 급보를 보내어 전세를 많이 거둔 사실을 추궁하지 말고 邑役도 덜어주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10월, 17일 기사조.)

13)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8일 갑진조.

14)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3월, 11일 경인조.

15)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5월, 19일 정유조. ;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5월, 19일 신묘조.

16)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 5월, 29일 병신조.

17) 그의 조상인 이선래는 그의 선친이 관음굴에서 기도하여 출생하였다고 한다.(『태조실록』 권1 총서.)

위의 인용한 글에서 보듯이 태종 12년 각림사 주지 석휴의 상언 내용은 그가 절을 비운 사이 승도들이 전세를 너무 많이 거두어 佃客이 고소하였고 절의 승려들에게 부과되는 요역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왕은 고소내용을 추궁하지 말게 하고 요역도 덜어주었다. 당시 각림사가 중창되어 낙성될 무렵이었고 오히려 절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¹⁸⁾ 세종 3년 3월 각림사 주지였던 석휴는 왕을 찾아뵈었을 때도 쌀 2백석을 하사할 만큼 태종의 아낌을 받았다.¹⁹⁾ 그 이전인 태종 17년 각림사 승려가 쌀을 바꾸도록 요청하였을 때도 이를 들어주기도 하였다.²⁰⁾ 원주 각림사는 태종이 잠저시 13세 무렵²¹⁾ 공부를 하던 곳이었기 때문이었다.²²⁾ 그런데 당시 태종 16년 무렵에 각림사 주지는 義游이었으므로²³⁾ 쌀을 바꾸도록 청한 승려는 의유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의유는 천봉만우와 가까이 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만우의 문도라 생각된다.²⁴⁾ 이처럼 각림사 주지의 상언은 각림사의 수조와 요역의 감면 등 왕실의 지원 속에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세조대에 이르러 승려의 상언은 京外の 僧人과 福泉寺 승려 省愚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보다 앞서 京外の 僧人들이 上言하였다.

“圓覺寺의 重創은 본래 우리 僧徒의 일이니, 빌건대 양식을 가지고 赴役하게 하고, 인하여 度牒을 주소서.” 禮曹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

(『세조실록』 권35, 세조 11년, 1월, 21일 기사조.)

18)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 7월, 5일 무오조.

19)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 3월, 8일 경오조.

20) 위와 같음.

21) 『세종실록』 권6, 세종 1년, 11월, 9일 기유조.

22)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12월, 20일 임자조,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9월 14일 갑인조.

23) 『세종실록』 권32, 세종 8년, 4월, 9일 임신조.

24) 『세종실록』 권32, 세종 8년, 5월, 8일 신축조.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원각사는 증부 慶幸坊에 있으며 개국 초에는 曹溪宗의 本社가 되었던 흥복사를 세조 10년에 고쳐 창건하였던 사찰이다.²⁵⁾ 서울과 지방의 승인들이 원각사 증창이 승도의 일이라고 하면서 도첩을 요구한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왜냐하면 고려말 이래 승려의 출가를 제한하고자 시행하였던 도첩제는, 조선전기에 이르러 승려들의 도첩요구는 계속되었지만 그들이 상층부의 승려들이 아닌, 일반 승려들로서 그들의 출가 자격증이라고 할 도첩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²⁶⁾ 하급 승려층이 집단적으로 상언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의 中外의 승려들은 다음의 글에서 보듯이 바로 복천사 승려들을 지칭하는 듯 하다.

眉節前

巡行後 所在各遠 音聞邈爾 且國中 … 圓覺寺之事 具如普聞 … (〈세조가 신미에게 보낸 서신>²⁷⁾)

위의 글에 의하면 ‘세조가 순행 후 각자 멀리 떨어져 있어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 원각사의 일을 듣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여기서 ‘원각사의 일’은 원각사가 한창 창건 중에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대체로 원각사의 조성은 세조 10년으로 보고 있고 세조의 순행은 세조

2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漢城府. 실록에 의하면 원각사의 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즉 ‘孝寧大君이 檜巖寺에서 圓覺法會를 베풀었는데, 如來가 現相하고 甘露가 내렸다. 黃筮娑의 승려 3인이 塔을 둘러싸고 精勤하는데 그 빛이 번개와 같고, 빛이 대낮과 같이 환하였고 彩色 안개가 공중에 가득 찼다. 舍利가 分身하여 수백 개였는데, 그 舍利를 舍元殿에 供養하였고, 分身이 수십 枚였다. 이와 같이 奇異한 祥瑞는 실로 만나기가 어려운 일이므로 다시 興福寺를 세워서 圓覺寺로 삼고자 하였다.」(「세조실록」 권33, 세조 10년, 5월, 3일 갑인조)

26) 도첩제에 대해서는 줄고를 참조바람.(황인규,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度牒制의 시행과 그 의미」, 『보조사상』 22, 2004.)

27) 이 서신은 신미의 동생 김수은의 후손인 金東杓씨가 소개한 것으로 이호영교수의 논문에서 재인용하였다.(이호영, 「승 신미에 대하여」, 『사학지』 10, 1976.)

10년 2월 온양온천을 가다가 청주를 거쳐 보은 속리사와 복천사에 가서 信眉를 만난 것을 의미하는 듯 하다.²⁸⁾ 세조는 세조 10년 2월에 복천사에 다녀와서 원각사를 창건하면서 서신을 신미에게 것으로 추정된다.²⁹⁾ 세종 31년 무렵 수륙사의 주척사찰이 문제가 되었을 때³⁰⁾ 왕은 신미에게 자문하여 복천사가 수륙사로 지정되었다.³¹⁾ 세조 11년 원각사의 증창에 참여하였던 京外의 승려는 복천사의 승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로부터 1년 뒤 그 복천사의 승려 省愚가 다시 호조에 상언을 하였다.

戶曹에서 福泉寺 승려 省愚의 狀告에 의거하여 아뢰었다.

“本寺의 田地 2백 結 내에 여러 官司에 上納하는 稅米豆가 생산되는 田地는 軍資에 還屬시키고, 그 나머지 田地를 本寺에서 收稅하는 일은 狀告에 의거하여 조사[磨勘]하여서 計除하고, 그 闕內에서 행하는 水陸社의 例로써 稅米豆를 전부 收納하는 일은 本寺가 나라에서 행하는 水陸社가 아니니, 청컨대 들어주지 마소서.”

傳敎하였다. “稅米豆까지 그 절에 속하게 하라.” (『세조실록』 권39, 세조 12년, 9월, 11일 기묘조.)

위의 글은 복천사의 성우가 장계를 호조에 올린 내용이다. 절의 전지 200결 가운데 稅米豆가 생산되는 전지는 군자에 환속시키고 난 나머지 전지를 수세하도록 청하고 궐내에 행하는 수륙사로서 세미두를 모두 거

28)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문이 참고된다. 任元濬의 記에, “天順 8년 봄 2월에 우리 主上 承天體道烈文英武殿下께서 남쪽으로 충청도를 巡狩하시면서 俗離山 福泉寺에 거둥 하사 慧覺尊者를 만나 보시고, 그 뒤 3월 초 1일에 온양군의 溫湯에 거가를 머무르셨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忠淸道 溫陽郡 山川 神井條)

29) 『俗離山福泉寺重修普勸文』, 藏書閣 소장, 이호영 앞의 논문 44쪽에서 재인용.

30) 『세종실록』 권124, 세종 31년, 4월, 21일 경오조.

31) 『문종실록』 권9, 문종 1년, 9월, 5일 경자조, 『문종실록』 권2 문종즉위년 6월 22일 갑오조 신미에 대해서는 줄고를 참조바람.(황인규, 『세조대의 삼화상고-신미와 두 제자 학열과 학조』, 『한국불교학』 26, 2004. ;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 혜안, 2005.)

두어들이도록 상언하였다.

그런데 「福泉寺事蹟」에 따르면 세조 10년(1464)년 무렵 신미·사지·학열·학조 등의 고승과 더불어 정업원주지 해민이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데³²⁾, 해민은 왕실 士女의 출가 여승사원인 비구니원의 주지로서 사찰의 승려들에 대한 약탈 방화에 대한 강도들을 포획할 것을 요청하였다.³³⁾ 이에 조정은 즉시 군사를 풀어 강도들을 잡게 하였다.³⁴⁾ 그만큼 당시 신미 등 삼화상과 더불어 정업원 주지의 위상을 가늠케 하는 장면이다.

해민과 함께 해인사 불사를 하였던 세조대의 삼화상이라 불리었던 學祖의 상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승려 學祖가 와서 아뢰었다. “일전에 신을 奉先寺의 住持로 명하셨는데, 강원도 月精寺의 승려 行謙은 일을 주관할 만한 자이니, 청컨대 本道の 觀察使에게 명하여 말을 주어서 올려 보내 주소서.”

(임금이) 전교하였다. “마땅히 그 말대로 따르겠다. 또 시킬 만한 자가 있으면 그대가 아뢰도록 하라.” (『성종실록』 권155, 성종 14년, 6월, 16일 정축조.)

위의 인용한 글에서 보듯이 學祖(1432~1514)는 봉선사의 주지를 자기와 친분이 있는 月精寺의 승려 行謙으로 임명케 해달라고 상언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그는 奉先寺 住持로서 承政院에 나아가 절의 곡식을 동원하지 말기를 청하기도 하여 弘文館副提學 安處良 등 유생들의 매서운 비판을 받았다.³⁵⁾ 그는 貞熹王后의 教旨를 받고 海印寺의 大藏經板

32) 「俗離山福泉寺重修普勸文」, 藏書閣 소장, 이호영 앞의 논문 44쪽에서 재인용.

33) 비구니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기 바람.(이기운, 「조선시대 왕실의 비구니원 설치와 실행」, 『역사학보』 178, 역사학회, 2003.)

34) 『세조실록』 권30, 세조 9년, 6월, 12일 경오조. 성종대 해민이 입적하한 직후 설준이 추천하였다고 비난을 받은 것(『성종실록』 권32, 성종 4년, 7월, 27일 병진조.)을 보면 그 후 불교계의 탄압이 심해져 갔음을 알 수 있다.

堂을 重創하라는 명을 받아 海印寺 大藏經板堂 修補監役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사의를 청하였다.³⁶⁾ 그는 1464년(세조 10) 속리산 복천사에서 왕을 모시고 스승 신미와 함께 대법회를 열기도 하였고 1483년(성종 14) 봉선사에 주석한 후 김천 직지사예 머물면서,³⁷⁾ 1489년(성종 20) 해인사를 중수하였다.³⁸⁾

그런데 봉선사의 한 승려가 다음과 같이 상언을 다시 찾을 수 있다.

奉先寺 승려가 上言하였다. “本寺 位田稅의 米豆는 先王·先后를 위하여 水陸齋를 마련하는 데 需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제 戶曹에서 스스로 거두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軍資倉 곡식으로 주니, 이것을 써서 供辦하면 아마도 정결하지 못할 듯합니다. 청컨대 예전대로 스스로 거두게 하소서.” ….
(임금이) 전교하였다. “上言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성종실록』 권 272, 성종 23년, 12월, 22일 무오조.)

봉선사의 位田稅의 米豆는 오래전부터 先王·先后를 위하여 水陸齋를 마련하는 데 需要되는 것인데, 戶曹에서 스스로 거두는 것을 허락치 않고 軍資倉 곡식으로 준 것에 대해 예전대로 스스로 거두게 해달라고 하여 이를 들어주었다.

다음은 齊陵의 능침사찰인 衍慶寺 주지 能了的의 상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5) 『성종실록』 권181, 성종 16년, 7월, 4일 임자조. ; 『성종실록』 권181, 성종 16년, 7월, 8일 병진조.

36) 『성종실록』 209, 성종 18년, 11월, 8일 계묘조. ; 『성종실록』 권209, 성종 18년, 11월, 8일 계묘조.

37) 『直指寺事蹟』, 『直指寺誌』, 아세아문화사, 1980.

38) 학조에 대해서는 졸고를 참조바람.(황인규, 『세조대의 삼화상고-신미와 두 제자 학열과 학조』, 『한국불교학』 26, 2004. ;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 해안, 2005.)

衍慶寺 住持 僧 能了가 절을 수증하려고 椽木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권243, 성종 21년, 8월, 10일 경인조.)

衍慶寺는 태조의 정비 神懿王后의 능인 齊陵의 능침사찰로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 태종 10년 낙성되었던 사찰이며,³⁹⁾ 연경사 주지가 절을 보수하고자 椽木을 구하고자 청하여 이를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왕실의 능침사찰 뿐만 아니라 연산군대 또 하나의 비구니원으로 생각되는 자수궁에서 상소를 올린 사실을 다음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慈壽宮의 尙宮 崔氏가 上言하였다. “근자에 尼僧으로서 20세 이하는 다 還俗하게 하고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상을 주는데 이와 같이 한다면 신의 여중으로서 賤籍에 부친 자는 그 연령을 상고할 수 있으나, 그 소생인 중은 비록 20세가 지난 자라도 奸人이 다 장차 고발할 것이니, 변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전교하였다. “이 법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승지들이 아뢰었다. “이미 立法한 것을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또 그 시봉하는 중은 반드시 머리를 깎아야만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산군일기』 권12, 연산군 2년, 1월, 11일 경인조.)

위의 글에서 慈壽宮 尙宮 崔氏가 尼僧으로서 20세 이하는 다 還俗하게 하고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상을 주는 것에 대한 반발로 상언을 한 것이다. 자수궁 뿐만 아니라 수성궁과 창수궁 등의 궁궐도 여승들이 거처하는 비구니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⁴⁰⁾ 본래 慈壽宮은 문종 즉위년 태조의 아들 撫安君의 옛집을 수리하여 先王의 後宮의 거처로 삼은 곳이고⁴¹⁾ 수성궁은 문종의 후궁이 사는 곳을 이룸하였던 것이다.⁴²⁾ 그리

39)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8월, 12일 신해조. ;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6일 임인조.

40) 『연산군일기』 권52, 연산군 10년, 4월, 12일 계묘조. ; 『연산군일기』 권52, 연산군 10년, 4월, 14일 을사조.

41) 『문종실록』 권1, 문종 즉위년, 3월, 21일 을축조.

고 성종이 謹嬪이 거처하는 궁을 일반적으로 자수궁이라 하는 것이 미안하기 때문에 이름을 昌壽宮이라 하였다.⁴³⁾

실제 후궁들이 출가하여 여승이 되었던 사실을 찾을 수 있다.⁴⁴⁾ 특히 세종·문종·세조·성종 등의 후궁들에서 출가하여 여승이 된 자가 적지 않은 듯하다.⁴⁵⁾ 예컨대 세조의 후궁 謹嬪 朴氏가 나이 80세로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항상 자수궁에서 거처하였고⁴⁶⁾ 성종의 후궁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었다.⁴⁷⁾

따라서 자수궁의 최씨도 여승이었다고 생각되며⁴⁸⁾ 또 하나의 정업원이면서 내원당⁴⁹⁾이라 할 자수궁은 왕실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소가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상궁 최씨가 상언한 바로 같은 해인 연산군 2년 장의사의 한 승려가 예조에 다음과 같이 상언을 하였다.

莊義寺의 승려가 예조에 보고하였다.

“절이 퇴락하고 파손된 곳이 많으니, 청하읍건대 繕工監으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소서.”

예조가 아뢰었다.

“黃海道의 승려들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소서.” …

(임금이) 전교하였다. “내년 봄에 군사들을 주어 수리하도록 하라.” (『연산군일기』 권18, 연산군 2년, 9월, 18일 신해조.)

42) 『단종실록』 권10, 단종 2년, 3월, 13일 갑자조.

43) 『성종실록』 권179, 성종 16년 5월, 9일 무오조.

44) 『연산군일기』 권53, 연산군 10년, 윤 4월, 19일 기묘조.

45) 『연산군일기』 권53, 연산군 10년, 윤 4월, 19일 기묘조. ; 『연산군일기』 권53, 연산군 10년, 5월, 1일 경인조.

46) 『연산군일기』 권55, 연산군 10년, 9월, 4일 신묘조.

47) 『연산군일기』 권56, 연산군 10년, 1월, 13일 기해조.

48) 자수궁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가 참조된다.(김용국, 「자수궁과 인수궁」, 『향토서울』 27,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66.)

49) 여기서 정업원이나 자수궁이 곧 내불당인 내원당이 아니라 궁궐내의 사찰이라는 의미이다. 조선중기후 봉은사가 외원당, 비구니원은 내원당이라 불리고 있다.

장의사는 왕실의 추념사찰로 태조의 정비 한씨의 기신재를 지낸 후⁵⁰⁾, 왕실사찰로 비호를 받은 사찰이다. 즉 세종 3년부터 선왕의 기일에 재올리는 사찰로 지정되어 영구법식으로 삼게 되었고⁵¹⁾ 세종 4년 태종의 초재를⁵²⁾, 세종 28년에도 역시 초재를 열리었던 사찰이었다.⁵³⁾ 그리고 이미 성종대에 봉선사와 함께 장의사의 중수요구에 유생들의 반대상소가 있었지만⁵⁴⁾ 연산군대에 이르러 다시 사찰을 중수해달라고 상언을 올려 이를 실현시켰다.

Ⅲ. 國家관련 고승의 上言

승려들이 국가와 관련한 일을 상언한 사례는 別瓦窯 化主 海宣과 汗蒸僧 明昊와 그의 제자 天祐·乙乳 그리고 津寬寺 幹事僧 覺敦을 들 수 있다. 먼저 별요 화주였던 해선의 상언은 실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진다.

… 海宣이 일찍이 나라에 말하였다. “新都의 大小 人家가 모두 茅[茅]로

50) 『태조실록』 권15, 태조 7년, 9월, 22일 갑오조.

51)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 1월, 19일 임오조.

52) 『세종실록』 권16, 4월, 5일, 15일 신미조.

53)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3월, 29일 병신조. 당시 장의사에서 齋가 열릴 때 8, 9천 명에서 1만여 인, 雜客 수천 명, 乞人 1만여 명이나 飯僧이 실시될 정도였다. 또한 예종 1년 장의사 중 閔山이 그 절의 승려 顧成이 佛供을 할 쌀을 水陸齋의 雜物이라고 詐稱하여 사사로이 쓰는 등 무리가 있었다고 백악산에 올라가서 정을 치고 옷을 휘두른 사건(『예종실록』 권8, 예종 1년, 10월, 29일 기묘조.)이 있었지만 장의사가 질책을 받은 사실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당시 장의사는 왕실의 대단한 비호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54) 『성종실록』 권218, 성종 19년, 7월, 22일 계미조.

집을 덮어서, 중국 사신이 왕래할 때에 보기가 아름답지 못하고 화재가 두렵습니다. 만약 別窯를 설치하고, 나에게 기와 굽는 일을 맡게 하여, 사람마다 값을 내고 이를 사가도록 허락한다면, 10년이 차지 아니하여, 성안의 閭閻이 모두 기와집이 될 것입니다.”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1월, 28일 기미조.)

別窯의 化主 都大師 海宣이 호조에 글을 올려 이르렀다. “승려 해선은 보건대 태종 5년에 태종 대왕이 이곳 <서울>에 환도하여 아직 <도시를> 營建한 지 오래지 않아서 민호가 지붕을 덮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別窯를 설치하고 기와를 구워 매매하게 하였더니, 수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기와집이 반을 넘었습니다. 어찌 화재만 면할 뿐이겠습니까.

장차 영구히 그렇게 되는 것을 보려고 하였는데, 불행히도 수년 동안 흉년이 들어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별요를> 혁파한 것이었습니다. 소승이 우러러 태종의 자애한 마음을 체득하고 <부처에게> 큰 서원을 빌어, 태종 16년에 임금께 신청하여 다시 別窯를 설치하고, 도성 안이 모두 기와집이 되어 <해마다> 지붕을 이는 노고를 없애고 화재 연소의 걱정을 없애고자 고심 분주한 지 지금까지 9년입니다.

그러나 일은 크고 힘은 미약하여 널리 보급시키지 못하여, 초가집이 오히려 많으니, 소승의 마음은 괴롭기만 합니다. 생각하건대, 소승의 나이 차차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 마음먹은 것을 끝내지 못하고 <태종의> 성스러운 덕택이 널리 퍼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일을 위한 장구한 계획을 생각하니, 寶를 세우는 것이 제일입니다.

대개 기와를 굽는데 세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

뒤틀사람이 나의 뜻을 계승하여 영구히 변경하지 아니하면, 도성 안이 모두 기와집이 될 것입니다. 소승이 평안·황해 양도에 사사로이 쌀 1천 석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 도에 바쳐 군수 물자에 충당하고, 忠州 慶原倉의 陳米를 받아서 보를 세우는 본전을 삼으면, 국가에는 해가 되지 않고 서울 사람에게 이익이 있는 일이니, 임금께 전달하여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세종실록』 권26, 세종 6년, 12월, 7일 무신조.)

해선은 자은종 도승통 종림의 제자로서, 慈恩宗 都僧統으로서 유가종 종문의 영수로서 대복전이 되어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금

산사·해안사·법천사·안양사 등 유가종계의 사찰의 주지를 역임하였고⁵⁵⁾ 양가도승통의 승직에 오른 유가종의 교주로서 우세군에 책봉된 인물이었다. 조선 건국직후 태조 5년 옛 광주 원강촌의 판교원과 사평원을 조운홀·윤안정과 함께 축조하였다.⁵⁶⁾

그런데 鄭以吾의 기문에 의하면 용산강가에 棺槨所를 설치하고 자은종도승통 종림에게 주관케 하였다. 종림이 입적한 후 그의 제자 해선이 그 뜻을 이어받아 그 사업에 힘썼다고 한다. 해선은 태종 5년 한양으로 재천도하자 별요를 설치하라고 상언하였고⁵⁷⁾ 기와 굽는 일을 맡아서 하였다.⁵⁸⁾ 그는 세종 6년 별요와를 다시 설치하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원의 기금운용체제인 寶를 설치하거나 자신이 마련한 비용을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래 별요의 설치는 백성의 집을 營構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간사하는 승도들이 그 본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사를 빙자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였다.⁵⁹⁾ 이처럼 해선에 의하여 별와요를 두도록 한 것은 백성들의 집을 짓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55) 李穡, 「昨蒙慈恩都僧統祐世君 來賀種德新拜密直 且設盛饌僕誰炳餘 不敢辭痛飲 至醉是晚有 明日吟成 三首錄呈」, 『牧隱詩藁』 卷28. ; 李穡, 「浩然子安僕邀 僕及韓孟雲先生 登山在麓 作動至 則鄭密直園隱與慈恩祐世君金山長老 李判書士涓已來相候登其峯四眺 猶 不滿意削西徒 至甘露寺南峯 則敞谿益甚酬吟 咏更約菊花會 重開 至夜分乃歸李清州士穎鄭副令 又其後至者也 明日追思如夢中 情不能已吟成一首」, 『牧隱詩藁』 卷30. ; 李穡, 「慈恩祐世君在海安寺講經」, 『牧隱詩藁』 卷29. ; 李穡, 「昨觀祐世君瑜伽道場歸而志」, 『牧隱詩藁』 卷25. ; 李穡, 「其韻以述所懷(宗林)」, 『牧隱詩藁』 卷20. ; 李穡, 「有感慈恩都堂」, 『牧隱詩藁』 卷23.

56) 「태조실록」 권9, 태조 5년, 3월, 4일 신유조. ;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12월, 5일 임신조 檢校政堂文學 趙云佐 卒記. 이에 대해서는 줄고를 참조바람(황인규, 「여말선초 유가종승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사학』 39, 2003. ; 황인규,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연구」, 혜안, 2004.)

57) 별요와는 그후 태종 14년 4월에 혁파되었으나(「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4월, 7일 경술조.) 세종 30년 吳信仁도 별요를 복설하라고 청하였으나 파하였다고 한다.(「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9월, 22일 을사조.)

58)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1월, 28일 기미조.

59) 「세종실록」 권89, 세종 22년, 5월, 9일 경술조.

다음은 한증승 明晷와 그의 제자 天祐·乙乳⁶⁰⁾의 상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예조에서 啓하였다. “汗蒸하는 승려로 大禪師 天祐·乙乳 등이 말하기를, ‘한증으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인애하는 정치의 한 가지가 될 만한 일입니다. 지난 계묘년에 大師僧 明晷가 湯浴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병 있는 백성을 구제하려고 성상께 말씀을 올렸던 바 있습니다. 성상께서 가상하게 여기시어 바로 집을 마련해 주시고, 浴室을 만들라고 명하셨는데, 일이 미처 착수되기도 전에 명호가 죽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널리 시주를 받아들이어 연전에 浴室을 증설한 바, 한증으로 병을 고친 자가 계속하여 끊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병자는 뭇나무를 준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죽을 쑤어 먹기와 소금·간장 따위도 마련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비록 안타깝고 민망하나 공급할 길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아시게 되어 쌀 50섬과 무명 50필만 주시면 그것으로 밀천 삼아 이식만을 가지고 쓰면서 본 밀천은 도로 나라에 반납하고서 영구히 寶를 세워 가지고 그것으로써 병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소승들의 지극한 소원이옵니다.’ 하니, 그 소원에 따라서 쌀과 배를 주고, 또 의원 한 사람을 정하여 그로 하여금 똑같은 마음으로 치료해 주게 하고, 1년이 되면 교대시키는 것으로 일정한 법을 삼기를 청합니다.”

(왕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36, 세종 9년, 4월, 24일 임오조.)

위의 글에서 한증승 明晷는 태종대 태조의 비 신의왕후의 능인 齊陵의 碑와 태종의 자 성녕대군의 신도비의 글씨를 썼던 刻字僧이었다.⁶¹⁾ 그는 위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 5년 왕에게 상언을 올려 백성들을 위해 한증소를 지어달라고 하여 집을 하사받고 욕탕을 만들려다가 입적하였다고 한다. 그 후 그의 제자 선사 天祐와 乙乳가 한증소를 지

60) 天祐와 乙乳는 明晷의 제자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선사의 승계를 지니고 있고 명호를 大師僧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61)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3월, 16일 정사조. ; 『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 4월, 4일 갑신조.

었으나 운영비를 마련코자 세종 9년 예조에 상언을 올렸다. 앞서 언급한 별요와 화주 해선처럼 그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寶로써 한증소를 운영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津寬寺 幹事僧의 방납과 관련한 상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처음에 津寬寺 幹事僧 覺頓이 전라도로부터 돌아와서 安平大君 李瑢에게 고하였다. “이제 草茆을 防納하려 하는데, 羅州 등 30여 고을에서 모두 다른 사람을 시켜 防納하지 못하게 하였다.”

大君이 아뢰니, 임금이 노하여 그 고을 正朝進奉鄕吏를 義禁府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더니, 모두 죄를 자복하였다.... (『세종실록』 권127, 세종 32년, 1월, 29일 갑술조.)

진관사가 공물을 대납하게 된 것은 그 절이 불교계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 때문이다. 진관사 뿐만 아니라 당시 왕실과 관련된 중요사찰인 대자암이나 복천사의 경우도 대납하는 권한이 주어졌다.⁶²⁾ 특히 진관사가 왕실의 원당으로서 齋寺였을 뿐만 아니라 세종 31년 5월 수륙사가 설치되어 觀音窟·五臺山 上元寺·巨濟 見庵寺와 더불어 매년 2월 15일에 水陸齋를 행하는 곳이 되었고⁶³⁾ 새로운 선교양종의 본산 후보사찰로 부상할 정도로 중요사찰이었다.⁶⁴⁾ 당시 鄭本(?~1454)이 대납을 건의한 후부터 간사승들이 州郡에서 거두게 하였다. 이에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진관사 수륙사를 짓는데 需用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납케 하였다.⁶⁵⁾ 후의 일이지만 별요·귀후소·교서관에서 代納하는 각 고을 따

62) 『문종실록』 권4, 문종즉위년, 11월, 4일 갑진조.

63)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2월 6일 경술조. ; 『세종실록』 권124, 세종 31년, 5월, 4일 계미조.

64) 『세종실록』 권72, 세종 18년, 6월, 18일 계축조.

65) 『문종실록』 권1, 문종즉위년, 4월 28일 신축조.

木과 燒木을 진관사 수륙사 간사승이 대납케 하였다.⁶⁶⁾

그런데 유생들은 진관사의 각돈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비난을 받는 가운데⁶⁷⁾, 각돈은 그와 친분이 있던 안평대군 이용에게 방납을 방해한 사실을 고하였고 대군이 다시 왕에게 아뢰었던 것이다. 그는 그에 머물지 않고 다음과 같이 訴狀까지 제출하였다.

이보다 앞서 津寬寺의 幹事僧이 訴狀을 제출하였다. “내가 全羅道 각고을의 田稅의 종이[紙]와 草芻을 代納하고 代價로 쌀 1천 1백 50石을 漕運하여 서울에 온 지가 며칠이 되었는데도 船人이 나타나지 않으니, 반드시 이것은 盜用할 계획입니다.”

義禁府에 내려서 推問하게 하였다. … (『문종실록』 권1, 문종즉위년, 3월, 28일 임신조.)

각돈은 파천 淸溪寺주지를 거쳐 진관사 주지로서 (진관사) 수륙사를 중창한 승려였다.⁶⁸⁾ 이처럼 각돈은 왕실이 참여하여 존경하는 고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록에 간사승 가운데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자로서 여러 고을에 횡행하였다⁶⁹⁾고 하면서 비판받고 있으나 사실은 불교를 흥포하고 방납의 일도 대행한 것이다.⁷⁰⁾

본래 대납이란 세조가 민간의 田稅와 貢物을 사람들로 하여금 京中에

66) 『문종실록』 권1, 문종즉위년, 5월, 16일 기미조.

67) 『세종실록』 권124, 세종 31년, 5월, 4일 계미조.

68) 『단종실록』 권6, 단종 1년, 6월, 21일 병오조. ; 『단종실록』 권6, 단종 1년, 6월, 24일 기유조. ; 『문종실록』 권6, 문종 1년, 2월, 3일 임신조. ; 『단종실록』 권6, 단종 1년, 6월, 30일 을묘조.

69) 『세종실록』 권124, 세종 31년, 5월, 4일 계미조.

70) 『세종실록』 권127, 세종 32년, 1월, 29일 갑술조. ; 『문종실록』 권1, 문종 즉위년, 4월, 13일 병술조. ; 『문종실록』 권1, 문종 즉위년, 4월, 28일 신축조. ;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0월, 30일 경자조. ;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1월, 1일 신축조. ; 『문종실록』 권6, 문종 1년, 3월, 4일 계묘조. 각돈에 대해서는 다음의 참고를 참조바람.(황인규, 『조선전기 불교계의 고승탄압과 순교승』, 『불교사연구』 4·5합,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2004. ;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조선전기 고승연구』, 해안, 2005.)

서 先納하도록 허락하고 그 값을 민간에서 바로 징수케 한 것을 말한다. 특히 刊經都監으로 하여금 代納하는 권한을 가지게 하여 남의 재화를 먼저 받아 대납하게 하였는데 이를 納分이라 하였다.⁷¹⁾ 그러한 간경도감의 대납과 관련된 상언 사례도 찾을 수 있다.⁷²⁾

이상에서 왕실과 국가관련 사찰의 주지 및 고승들이 사찰의 중수나 방납과 관련한 상언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불교계 고승들의 불교계 교단을 위한 상언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IV. 佛敎界관련 고승의 上疏

태조대 상언한 고승으로 尙浮와 尙聰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상부가 상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兩街都僧統 尙孚가 승려가 술 마시는 것을 금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憲司로 하여금 엄히 禁하게 하고, 이를犯하는 자는 머리를 길러 充軍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 4월, 11일 정해조.)

尙孚은 이색과 교유했던 送月堂 李思敬의 아들로⁷³⁾, 보우와 혼수의 문도였다. 그는 승정기구였던 승록사의 兩街都僧統으로서 직접 나서서 승려의 비행에 대한 대처를 청하였다. 이처럼 불교계 스스로가 자정을 위한 노력은 보우의 문도이면서 상부와 도반인 상충에게서 그러한 면모를 확실히 엿 볼 수 있다.

71) 『예종실록』 권3, 예종 1년, 1월, 27일 임오조.

72) 『세조실록』 권35, 세조 11년, 1월, 10일 무오조.

73) 이색, 『송월당기』, 『목은문고』 권5.

興天社의 監主 尙聰이 글을 올렸다. “... 고려 왕조의 말기에는 선종과 교종이 이익과 명예만을 탐내어 유명한 사찰을 다투어 차지하여 그 선을 닦고 교를 넓히는 곳은 겨우 한두 개만이 남아 있었으니, 어찌 국가에서 비보 사찰을 창건한 본뜻이겠습니까? 조사 眞覺이 말씀하시기를, ‘禪道는 국운을 연장시키고, 『智論』은 이웃나라의 병란을 진압한다.’ 하였는데, 대체 어찌 증거가 없이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지금부터 선종과 교종 중에서 도덕과 才行이 영수가 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서울과 지방의 유명한 사찰을 주관하게 하되, 선을 맡은 사람에게는 선을 설명하면서 拂子를 잡게 하고, 교를 주관한 사람에게는 경을 講하고 律을 설명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후진들로 하여금 선종은 『傳燈錄』의 拈頌을, 교종은 經律의 論疏를 節을 따라 강습시켜서 세월이 오래가면 뛰어난 인물과 덕망이 높은 인물이 어느 절에도 없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本社라 일컬었으니 그 서울과 지방의 유명한 사찰도 마땅히 松廣寺의 제도를 모방하여 모두 본사의 소속으로 삼아서 서로 규찰하게 한다면, 그 법을 만들어 복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비록 점점 쇠퇴하고자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래에는 법을 만드는 규정이 모두 중국 승려를 만들어 본받고 그 단독의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니, 이른바 ‘법을 그리려다가 되지 않매 도리어 강아지를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송광사의 조사인 普照의 남긴 제도를 講하여 이를 시행하고 기록하여 일정한 법으로 삼고, 또한 승려의 무리들로 하여금 조석으로 감화 수련하게 한다면, 위로는 전하께서 佛道를 세상에 널리 퍼게 한 은혜를 보답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여 영구한 세대에 전하게 한다면 어찌 대단히 국가에 이롭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5월, 13일 기미조.)

尙聰(1330?~1410?)은 보우의 문도로 송광사 주지를 역임한 고승이다. 즉 그는 『태고화상어록』 ‘慧庵松壙聰長老’로 나오고 태고의 비문에 문도로 나오고 있지만 또한 보우의 문도인 혼수의 비문 음기에 문도로도 나오고 있다.⁷⁴⁾ 그는 태조 7년 정릉의 능침사찰로 창건되어 후에 선종의

도회소가 되는 흥천사의 감주가 되었다. 그는 불교계의 근본적인 쇄신을 위해서 승풍을 혁신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우선 그는 상소에서 고려시대 사찰의 원리인 비보사찰설에 의해 사찰을 운영하고⁷⁵⁾ 덕과 재행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사찰을 주관케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의 선풍을 따르지 말고 송광사 보조국사의 선풍을 본 받고 구체적인 강의과목으로 교육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의 상언은 받아들여져 후에 흥천사가 禪宗의 본산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총의 불교계 승풍의 혁신 등 불교계의 자정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 대한 탄압시책은 본격화되어 갔다. 이러한 때 불교계의 無學自超와 省敏의 상언은 자정적 성격을 넘어서 적극적인 저항의 성격을 띠었다고 생각된다.

임금이 檜巖寺에서 태상왕에게 문안을 드렸다. 이에 앞서 태상왕이 王師自超의 戒를 받고 고기를 드시지 않아 날로 점점 야위어 갔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환관을 시켜 自超에게 말하였다. “내가 太上殿에 나가서 獻壽하고자 하는데 만일 태상왕께서 고기를 드시지 않는다면 내가 장차 왕사에게 허물을 돌리겠다.”

자초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회암사를 물러나와 작은 암자에 나가 있었다. 임금이 온다는 말을 듣고 회암사 주지 祖禪과 함께 태상왕께 아뢰었다. “임금께서 고기를 드시지 않아 안색이 점점 야위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로지 전하[上位]께서 부처님을 좋아하시는 은혜를 입어 미친한 목숨이 편안히 지내고 있는데 지금 전하[上]의 안색이 야위신 것을 보니 저희들의 목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겠습니다.”

태상왕이 말하였다. “국왕이 만일 나처럼 부처를 숭상할 수 있다면 내가 마땅히 고기를 먹겠다. 임금이 술잔을 올리자 태상왕이 이를 허락하면서 얼굴 빛이 편안하고 온화해졌다.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8월, 2일 계축조.)

74) 그 외에 상총에 관한 기록이 『조선사찰사료』와 실록에 한 건씩 더 보이고 있다.(『白巖寺 轉藏法會堂司榜』, 『조선사찰사료』 상, p.175. ; 『세종실록』 권50, 12년, 윤12월, 17일 계축조.)

75) 비보사찰설에 대해서는 졸고를 참조바람.(황인규, 『고려 禪補寺社의 設定과 寺莊運營』, 『東國歷史敎育』 6, 1998. ; 황인규,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연구』, 해안, 2004.)

위의 글은 無學自超가 그의 제자인 회암사주지 鐵虎祖禪⁷⁶⁾과 함께 이성계에게 육선을 들도록 상언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자초는 태종이 불교탄압시책을 펴려고 하였을 때 태상왕인 이성계를 종용하여 이를 지연하게 하였다. 즉 이성계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육선을 먹지 않겠다고 버티었는데 태종이 이를 만류하도록 자초와 조선에게 으름장을 놓자 이성계에게 육선을 들도록 하였다는 것이다.⁷⁷⁾ 그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초가 입적하자 불교계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적 개혁을 단행하였다.⁷⁸⁾ 그러자 태고보우의 문도였던 성민이 다음의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계의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신문고를 치면서 상언을 올렸다.

曹溪寺 승려 省敏이 申聞鼓를 쳤다. 승도들이, 절의 수를 줄이고 노비와 전지를 삭감하는 까닭으로, 날마다 정부에 호소하여 예전대로 회복하도록 요구하니, 정승 河崙이 답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성민)이 그 무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신문고를 쳐서 아뢰었으나, 임금이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권11, 태종 6년, 2월, 26일 정해조.)

위의 인용한 글에서 보듯이 1406년 찬영의 문도인 省敏은 사찰의 수

76) 祖禪은 호가 이며 자초가 1402년(태종 2)에 檜巖寺 監主로 임명될 때 더불어 주지로 임명된 인물이고, 고려말 자초와 더불어 趙仁規 가문의 원당인 과친 淸溪寺의 주지였음을 볼 때 자초의 문도라고 추정된다.(이색, 「안심사 지공나옹 사리석종비」, 『한국금석전문』 중세 하, p.1226. ; 황인규, 「조인규가문과 수원 만의사」, 『수원문화사연구』 2, 1998. ; 황인규,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연구』, 해안, 2004.)

77) 참고로 무학자초의 문도였던 祖生은 1403년(태조 2) 11월에 태조를 알현하고 개성의 도읍의 건설에 승려를 징집할 것을 청하였다. 그는 仁王寺 내원당 당주였으며 정종대 興天社의 주법이 된 승려였다.(『태조실록』 권4, 태조 2년, 11월, 19일 경신조. ; 『태조실록』 권11, 태조 6년, 6월, 23일 계묘조. ;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 1월 21일 기사조. ; 『정종실록』 권2, 정종 1년 8월 12일 기유조. ; 황인규, 「무학자초의 문도와 그 대표적 계승자」, 『삼대화상연구논문집』 3, 2001. ; 황인규,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연구』, 해안, 2004.)

78)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4월, 22일 갑술조.

를 줄이고 토지와 노비를 삭감한 데 대항해 의정부에 예전처럼 해줄 것을 요구하며 수백 명의 승려를 이끌고 신문고를 쳤다.⁷⁹⁾ 이러한 사례는 조선불교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불교계의 저항장면이다.

다음은 태종 8년 興天社 주지 云悟의 상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興天寺 住持 云悟가 白銀 50냥을 올리니, 관에서 그 값을 주게 하되 常例에 비하여 한 배 반을 더 주도록 명하였다.

운오가 上言하였다.

“開國하던 당초에 祖聖께서 本寺를 창건해 세우고 啓聖殿 신위를 奉安하였는데, 신이 이 절에 주지가 되어 조그마한 도움이 없고, 단지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여 위로 聖壽를 축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절은 크고 資產은 적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고 절의 間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마침내 慨然히 단식을 하면서 祖師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秘藏의 白銀 50냥을 國用에 충당하도록 삼가 바칩니다. 빌건대, 그 값을 내려 주시어 佛供하는 齋僧들의 만세 무궁한 資產이 되도록 해 주소서.” …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1월, 24일 정묘조.)

흥천사 주지 운오가 절은 크고 資產은 적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고 절의 間闕이 무너질까 두렵다고 하면서 화엄종단으로부터 내려오는 백은을 국가에 바치고 그 비용으로 불교 비용을 내려달라고 하였다. 운오는 재상 황희와 친한 고승으로 유생들의 비난을 받았지만⁸⁰⁾, 종단에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백은을 국가에 상납하여 절의 불사를 하여 당시 최고의 종단의 사찰을 지키려 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세조와 예종대 불교계의 고승이었던 妙覺王師 守眉와 慧覺尊者 信眉의 상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수미의 상언의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79) 『태종실록』 권13, 태종 6년, 2월, 26일 정해조.

80) 『세종실록』 권28, 세종 7년, 5월, 21일 경인조.

선종의 승려 수미가 승정원에 나아가 아뢰었다. “승도들이 횡행하여 求晴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내려 주었다.(『세조실록』 권14, 세조 4년, 9월, 6일 경인조.)

승려 수미가 전라도에 있으면서 奉書하여 아뢰었다. “僧人の 社長들이 혹은 圓覺寺의 佛油를 募緣한다 하고 혹은 낙산사를 영건하는 化主라고 하여 여러 고을의 민간에 폐를 끼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임금이 內贍寺正 孫昭를 보내어 가서 국문하게 하였다.(『세조실록』 권46, 세조 14년, 5월, 4일 계해조.)

수미는 세조 4년(1422) 문란한 승려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승도들이 함부로 구청하지 못하도록 승정원에 나아가 상서하거나 세조 14년(1468) 도감사에 내려와서도 승도들의 募緣 등 폐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막도록 진언하였다.⁸¹⁾ 이처럼 선종판사였던 수미의 연화승의 폐단을 금지하라는 상서는 비록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당시 모두가 승인 가운데 操行있는 자라고 칭찬을 한 몸이 받았다.⁸²⁾ 이는 불교계의 청정수행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며 그 때문에 왕사로 책봉되기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그는 공경대부로부터 일반 민중들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존경을 받았다.⁸³⁾

이러한 수미와 더불어 세종과 예종대 불교계를 주도하였던 慧覺尊者 信眉가 상언한 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승려 信眉가 임금이 승려들에게 『金剛經』과 『法華經』을 講하여 시험해서 능하지 못한 자는 모두 還俗시키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諺文으로 글을

81) 柏庵性聰, 『靈巖 道岬寺 妙覺和尚碑文』, 『조선금석총람』 하. ; 『조선사찰사료』 상.

82) 『세조실록』 권33, 세조 10년, 4월, 13일 을미조.

83) 이에 대해서는 줄고를 참조바람.(황인규, 『고려후기·조선초 가지산문계 고승의 동향』, 『구산논집』 8, 2003.11. ; 황인규, 『세조대의 삼화상 신미와 묘각왕사 수미』, 『한국불교학결집대회논집』 Vol 2 No 1, 2004.5.)

써서 비밀히 아뢰었다.

“승려로서 經을 외는 자는 간혹 있으나, 만약에 講經을 하면 천 명이나 만 명 중에 겨우 한둘뿐일 것이니, 원컨대 다만 외는 것만으로 시험하게 하소서.”… (『예종실록』 권6, 예종 1년, 6월, 27일 기묘조.)

『금강경』과 『법화경』을 강론해서 능하지 못한 승려는 환속시킨다는 시책을 펴자 신미가 상소하여 이를 막으려 노력하였다.⁸⁴⁾ 그는 세조로부터 존경을 받아 그의 두 제자 學悅과 學祖와 더불어 삼화상이라 불렸고 예종대에도 왕실법회를 주관하면서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당시 그의 도반인 守眉와 더불어 승려로서 불교시책에 대하여 상소를 올린 예는 찾기 힘들다. 그 만큼 당시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삼화상과 묘각왕사 수미는 세조의 빈전법석에 불교계를 대표로 참여하면서 당시의 당로자 韓繼禧(1423~1482)와 사원전의 확대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였다.⁸⁵⁾

이렇듯 신미는 판선교종사로서 선종과 교종을 아우르는 입장에서, 수미는 판선종사로서 선종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당시 불교계를 통할하며 불교계의 현안에 대하여 기탄없이 상소를 올렸던 것이다.⁸⁶⁾

V. 나가는 말

상소는 관직에 있는 유생이나 유학들에 의해 왕이나 관청에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불교계를 위한 상소는 호불유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84) 『예종실록』 권6, 예종 1년, 6월, 27일 기묘조.

85) 『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21일 정축조.

86) 이에 대해서는 줄고를 참조바람.(황인규, 「세조대의 삼화상고-신미와 두 제자 학열과 학조」, 『한국불교학』 26, 2004. 2.)

것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본래세속잡사에 등지고 성직의 길을 가는 승려들의 상소는 있을 개연성이 적다고 하겠으나 불교적 탄압을 받을 때 찾아진다. 그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소는 조선후기 白谷處能(1617~1618)이 올린 조선 최대의 최장문의 상소문이다. 조선전기 승려의 상소문은 태종대 올린 尙聰의 내용이 전부라고 할 만큼 알려진 바 없다. 본고는 불교교단에 대한 탄압시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때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가에 주목하고 그 가운데 승려의 상소문을 검토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승려의 상소문으로 남아 내용의 전모를 알 수 있는 것은 상종의 것이 유일하고 그 나머지 것은 상언하였다는 정도의 지극히 간략할 뿐이다. 승려 개인의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京外의 승려들이 집단적으로 올린 경우도 있다. 특히 수백 명의 승려를 동원하여 신문고를 치면서 올린 경우도 있어서 매우 주목된다. 본고에서는 상소를 내용상으로 나누어 왕실과 국가관련 사찰의 주지급 고승의 상언과 불교계의 전면에서 활약한 고승들의 상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전자는 왕실사찰이나 국가사찰의 주지급 고승의 상언으로 사찰의 불사나 田租 등 왕실사찰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왕실관련 사찰은 開慶寺나 衍慶寺 등 왕실원당이나 능침사찰이나 福天寺 등 水陸社, 또는 慈壽宮 등 比丘尼院 들이었고 국가관련 상언은 別瓦窯 化主와 汗蒸僧 운영이나 津寬寺 幹事僧의 防納 또는 代納과 관련된 내용이다.

후자는 불교계 전체를 위한 내용이므로 전자보다 후자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불교계 전체를 위한 상소문의 내용은 불교계 쇄신을 위한 승풍의 진작, 불교계 탄압시책에 대한 저항, 연화승의 척결, 승과 과목의 현실적 조정 등이었다.

상소를 올린 승계 및 승직은 대부분 왕실 국가관련 사찰의 주지급 고승들이다. 상소를 올린 곳은 왕이나 6曹, 承政院 등이었는데 승려의 출

입이 금지된 분위기속에서 승정원에 직접 나가 상언을 하여 유생들의 비난 장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불교계 고승들의 상소문이 정부나 불교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왕실관련 사찰과 관련된 상언은 대부분 왕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국가관련 사찰의 경우 別窯와 汗蒸所의 설치 및 운용, 防納의 권한 유지 등도 역시 수용되었다. 불교계 전체를 위한 상소문도 尙浮의 승려의 음주사례, 尙聰의 승풍의 자정노력의 영향으로 興天寺가 후에 선종의 본산이 되었다. 無學自超와 그의 제자 祖禪이나 省敏의 불교계에 대한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탄압의 유보나 그 강도를 줄일 수 있었다. 홍천사 주지 云悟의 경우 화엄종단에 전해져오는 백금을 국가에 받치고 불사비용을 만든 것도 사찰수호의 노력의 일면이다. 王師 守眉의 緣化僧의 폐해의 근절 상언이나 慧覺尊者 信眉의 승과시험의 현실적 조정의 노력은 승유억불시책이 강화되던 시기의 불교계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自淨과 抵抗의 모습이다. 이러한 고승들의 땀과 피가 조선의 불교를 수호·발전할 수 있게 하고 오늘날 불교로 이어질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제 1차 자료 : 원전류

- 『태조실록』
- 『정종실록』
- 『태종실록』
- 『세종실록』
- 『문종실록』
- 『단종실록』
- 『예종실록』
- 『성종실록』
- 『연산군일기』
- 『익재난고』
- 『목은집』
- 『양촌집』
- 『춘정집』
- 『식요집』
- 『사가문집』
- 『동문선』
- 『한국불교전서』
- 『직지사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 『용재총화』
- 『한국금석전문』
- 『조선금석총람』

2. 제 2차 자료

1) 저서류

- 황인규,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연구』, 혜안, 2004.
-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연구』, 혜안, 2005.
- 김기녕, 『현정론, 간폐석교소: 조선시대의 호불론』, 한국불교연구원, 2003.

2) 논문류

- 김영태, 「이조대의 불가상소」, 『불교학보』 10,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73.
- 김용조, 「백곡처능의 간폐석교소에 관한 연구」, 『한국불교학』 4, 1979.
- 김기녕, 「조선시대 호불론 연구: 합허와 백곡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0.
- 이호영, 「승 신미에 대하여」, 『사학지』 10, 1976.
- 황인규, 「고려 裨補寺社의 設定과 寺莊運營」, 『東國歷史敎育』 6, 1998.
- 황인규, 「趙仁規家門과 水原 萬義寺」, 『水原文化史研究』 2, 1998.
- 황인규, 「幻庵混修의 생애와 불교사적 위치」, 『경주사학』 18, 1999.
- 황인규, 「고려후기·조선초 가지산문계 고승의 동향」, 『구산논집』 8, 2003.11.
- 황인규, 「세조대의 삼화상고-신미와 두 제자 학열과 학조」, 『한국불교학』 26, 2004. 2.
- 황인규, 「세조대의 삼화상 신미와 묘각왕사 수미」, 『한국불교학결집대회논집』 Vol 2 No 1, 2004.5.
- 황인규,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度牒制의 시행과 그 의미」, 『보조사상』 22, 2004. 8.
- 황인규, 「조선전기 불교계의 고승탄압과 순교승」, 『불교사연구』 4·5합,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2004. 11.

[Abstract]

A Buddhist Monks's Memorials to the Kings in Early Chosun Dynasty

Hwang, In-gyu

This study is to analyze to trace the Buddhists' the protest and protection of Buddhism through the memorial's of Buddhism in the Early Chosun Dynasty. Although only Master Baegok-cheoneung(白谷處能, 1617~1618) went directly to the king to complain and try to show the wrongfulness of the policy against Buddhism.

Until now, The historians studied the Chosun Buddhism had consensed the above fact, but I do not agreed this historical opinion, Though researching buddhist's memorials carefully, I concluded that the buddhists had endlessly struggled against the oppression. In spite of all the persecution, some of Masters actually tried to revive buddhism actively. Many monks protested against the unfairness of the measures taken by the Chosun kings.

There were many monks who protested against the oppression of buddhism: Sangboo(尙浮), Sukhyu(釋休), Seongwoo(省愚), Hakjo(學祖), Neongryu(能了), Choissi(晳氏) of Jasoogoong(慈壽宮), monks of

Jangeusa(莊義寺), Haeseon(海宣), Myongho(明昊), Gakdon(覺敦), Jacho(自超), Woonoh(雲悟), Soomee(守眉), Sinmee(信眉).

The memorials had consisted contents such as the preservation reconstruction of temples, buddhists' participation in agencies.

*** Key words:** Sangboo(尙浮), Sukhyu(釋休),
Seongwoo(省愚), Hakjo(學祖),
Neongryu(能了), Choissi(崔氏) of
Jasoogoong(慈壽宮), monks of
Jangeusa(莊義寺), Haeseon(海宣),
Myongho(明昊), Gakdon(覺敦), Jacho(自超),
Woonoh(雲悟), Soomee(守眉), Sinmee(信眉).